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

10만행동의 성립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해 행동해온 시민들이 연대를 확장해온 결과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이뤄온 반차별 운동의 과정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법제정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이 사회에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10만 행동의 성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말하지만 지난 14년의 과정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이 ‘국회의 시간’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시작한 법안이었지만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토론하며 변화를 추동한 것은 시민들이었고 차별금지/평등법을 사회적 의제로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차별금지/평등법을 원했나.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금 2021년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1. 차별금지/평등법 14년의 시간

차별조장법, 혐오를 퍼뜨리다.

한국사회에 평등은 주요한 가치인가. 2007년 법무부는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라는 7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사유 삭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며 한국사회가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기준과 논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다. 차별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후로 6전 7기. 차별금지/평등법은 14년동안 6번 발의되어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굴복하여 의원이 자진철회하는 수모를 겪었다. 국회 내에서는 한 번도 평등이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었다는 의미다. 논의는 커녕 이 사회는 정치권의 침묵 속에 차별금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14년동안이나 붙들려있었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평등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움직였고 특정 소수자를 향한 비방은 점차 확산되어 사회전반에 혐오의 정서를 퍼뜨렸다.

보수개신교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무산시키고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보류시키거나 철회시켰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농성장에 모욕과 혐오가 난입했고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혐오선거라 해도 무방한 20대 총선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목표로 내건 정당이 등장한 것은 물론, 유세 기간 내내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이 난무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평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며 촛불 운동으로 이어져 평등의 시대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촛불 이후 평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세워져야 했다. 그러나 촛불로 세워진 정권에서도 인권과 평등을 자신들의 과제로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기상조, 나중에 등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가치를 재단하기 바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14년,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선동, 모욕과 폭력의 문제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시민들, 평등에 나서다.

결국 시민들이 나섰다. 촛불 광장에는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없었다. 청소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목소리 내는 데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상상은 시작될 수 있음을 함께 외쳤고 행동했다. 촛불 이후 비시민으로 낙인찍혀온 이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모여 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차별금지/평등법이 등장했다. 혐오선동세력의 거센 혐오에 시달려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함께 외쳤다. 이는 그만큼 사회 전반에 혐오와 차별이 퍼진 탓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차별을 말하고 연결하는 연대의 과정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이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한다는 약속으로서 동료시민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시민의 연대는 그렇게 동료시민의 자리로 위치를 이동시키며 확장되었고 차별금지/평등법은 정부의 외면에도 ‘모두를 위한 법’으로 존재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의제로 차츰 떠올랐다.

그렇게 촛불과 함께 민주주의의 주체가 된 이들은 끊임없이 길을 만들며 이 사회에 반차별의 가치를 확장해왔다. ‘지금 당장’ 구호를 외치며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를 말하고 연대하며 차별금지/평등법은 생존의 요구임을 선언했다. 평등한 새시대에 대한 기대를 정치권에만 위탁하지 않고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이제 동성애 찬반은 낡은 프레임이 되었고 그와 함께 보수개신교계는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힘으로 10만 동의 청원은 성사되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우리가 만든 변화와 함께 더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지금, 다시, 여기에 당도해 있다.

## 2.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1)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평등법 차별금지사유 비교표>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박주민)
성별,장애,나이, <b>언어</b> ,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 <b>국적</b> ,피부색,출신지역,용모등신체조건,혼인여 부,임신또는출산,가족및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이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b>성별정체성</b> ,학력(學歷), <b>고용형태</b> ,병력또는건강상태,사회적신분등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 · <b>유전정보</b> 등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또는출산,가족형태및 가족상황,종교,사상또는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b>성별정체성</b> , 학력(學歷), <b>고용형태</b> ,사회적신분등

차별금지법을 두고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는 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싸워왔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 조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지, 한국사회는 온몸으로 경험해왔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는 이제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자는 차원의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유엔 또한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며 한국의 차별금지사유 논쟁에 경종을 울려왔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논쟁 역사에 비추어볼 때,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근에도 성별정체성,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또는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있도록 관련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2)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한다.**

(1)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 제공

<개별법 차별 개념 비교표>

	국가인권 위원회법	남녀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평등 법
직접차별	○	○	○	○	○	○
간접차별		○		○	○	○
괴롭힘				제32조괴롭힘등 금지 조항		○
성희롱	△ 고용,공공 기관	○		괴롭힘에포함		○
기타				차별표시조장 광고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등		차별표시조장 광고  복합차별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광고, 복합차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명시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등 법마다 차별의 개념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법에 따라 다른 차별 규율의 범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그 규율범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뿐만 아니라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차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둔 법제도 많다.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러한 차별의 개념들이 한국의 차별금지/평등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피해자들의 언어가 역사적으로 쌓인 결과물이 국내외 차별금지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차별의 개념이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개념을 2021년에 맞게 갱신함으로써,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2) 차별판단기준의 후퇴없는 법안 논의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p>모집·채용 / 근로계약 / 근로조건 / 임금·금품 지급 / 교육·훈련 / 배치 / 승진 / 해고·퇴직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p> <p>(예) 차별금지법안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li> <li>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li> <li>3.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등의 정보를 제시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li> <li>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5. 성별등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수를 구분하는 행위</li> </ol>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p>금융 / 교통수단 / 시설물 / 토지, 주거시설 / 보건의료서비스 / 방송서비스 / 문화, 체육, 오락 / 관광서비스 등에서의 차별금지</p> <p>(예) 차별금지법안 제21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p>교육기회 / 교육내용 / 자격증 및 교육훈련 등에서의 차별금지</p> <p>(예) 차별금지법안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li> <li>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li> <li>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li> </ol>

	4.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제4절 법령과 정책의 집행)	<p>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 수사, 재판서비스 등에서의 동등대우</p> <p>(예) 차별금지법안 제37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3장에서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다. 제3장의 내용은 한국사회가 그동안 확인해온 차별 판단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조문화된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별 판단 기준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하여 법안의 조문을 다듬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행해왔던 차별을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조문 수정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존의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는 차원의 조문 수정에 맞설 것이다.

**3)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한다.**

(1) 공정한 토대의 기본이 되는 입증책임 특례조항

차별금지법안(장혜영)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이상민 의원안도 유사)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p>◎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p> <p>◎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p> <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들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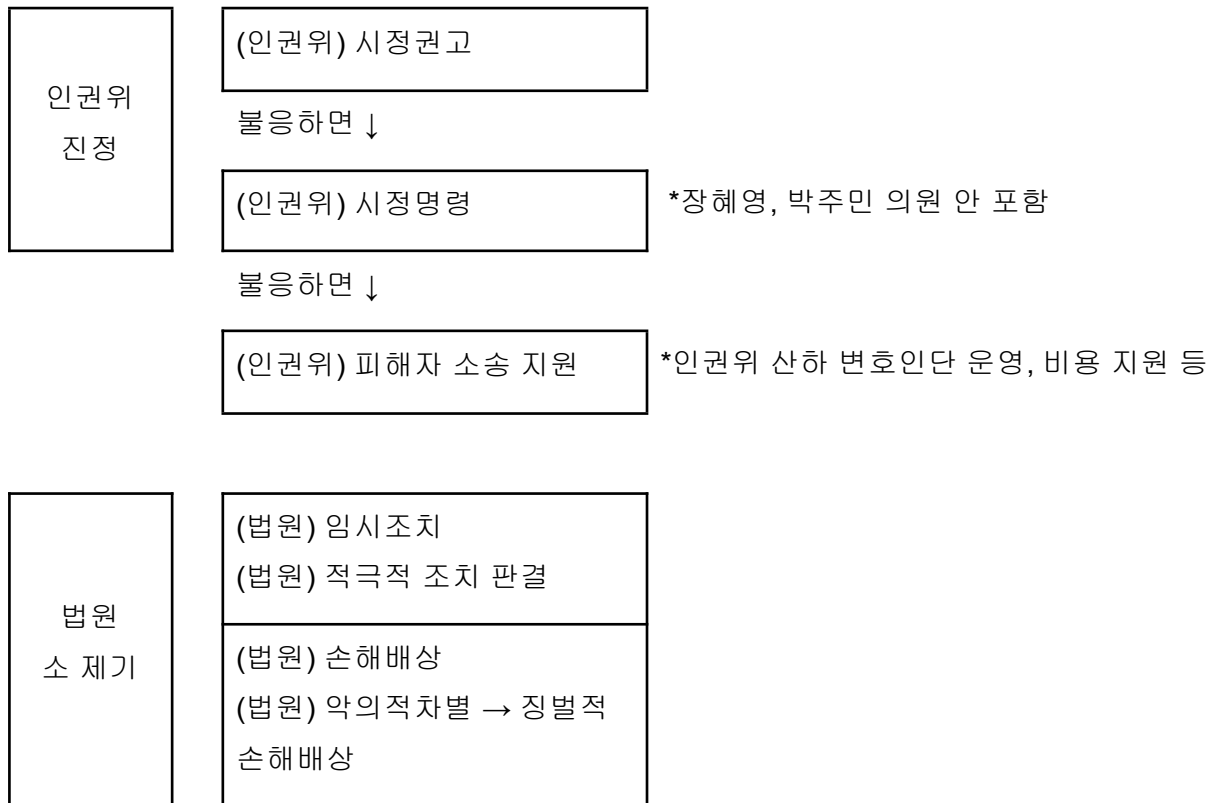
차별의 문제는 입증과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차등 대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행위로서 차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대부분 차등 대우를 한 행위자측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별 문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차별에 관해 주요한 입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문제되는 차등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차별에 관한 주요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조항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모든 차별금지법이 예외없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 고용에서의 정보공개 의무조항은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차별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방지**

차별금지/평등법안에는 차별에 관해 진정하거나 소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차별피해자를 돕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이 존재한다.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그를 돕는 사람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발견하여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익신고자이기도 하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나 조력자가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그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4)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1) 가장 효과적인 차별 구제 방안의 모색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제4장 차별의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내용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피해자의 소송 지원 및 소제기시 특례조항 등 차별의 구제를 위한 조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제도들이다. 각각의 제도 하나하나를 쪼개어 평가하기 보다 이들 제도가 맞물려 작동할 때 무엇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일지가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피해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될 권리가 있다. 차별 시정 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가장 실효성있는 방식을 찾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2)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꾸어내는 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11조

- 대통령은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시도교육감 등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후 추진실적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차별을 반복하게 만드는 관행과 구조에도 주목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실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차별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 차별 피해의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같이 다양한 차별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 제도,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조항, 기업 등의 악의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차별금지/평등법에 주요 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안 중 국가와 지자체의 차별시정의무에 관한 제2장 역시 국가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자신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차별 시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조항이 차별금지/평등법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2021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목표는 법 제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데 맞서 거리로 뛰어나왔던 그때부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운동은 언제나 법 제정을 넘어서는 운동이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막지 못했을 때 온 사회가 혐오로 장식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동성애 찬반 논쟁은 페미니스트 검증 논쟁을 불러 오고 무엇이 차별인지 학습할 기회를 놓친 자리에서 차별은 공정의 이름으로 포장되기에 이르렀다. 노동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된 지 오래이고 파편화되는 일터는 노동자들을 갈라내고 있다. 차별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며 우리 앞에 평등의 과제를 던져 놓는다. 한 번 물러선 자리에서 가지를 뺀고, 예민하게 곤두세우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위협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우리 일상의 변화로부터 법 제정을 추동하고자 했던 이유이고, 법 제정을 넘어 평등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10만 행동의 우리들은 단지 이름을 적어넣은 참여자가 아니었다. 내 주변에 한 사람을 더 평등에 동참시키려던 제안자였고 내 일상에서 평등을 세우려던 행동가였다. 단 한 명도 차별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우리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길을 내어왔고 나 역시 차별 받았을 때 기꺼이 맞설 수 있는 힘의 자리를 넓혀왔다. 서로의 존엄을 지킬 때 내 삶의 존엄도 지킬 수 있기에 우리는 법이 없어도 차별을 알아차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흠어들어지지 않고 평등으로 모이기를 원했다. 먼 옛날 밤하늘의 별자리를 길잡이 삼았던 항해사들처럼 차별금지/평등법은 평등을 향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길잡이일 뿐이다.

그러나 한편 이 길잡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싸워왔다. 어느 때보다 제정에 가까워진 지금은 더욱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시간이다. 차제연은 하반기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사위에 이메일 보내기,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온라인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늘 그랬듯 차제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역할을 모색할 때 가능한 일이다. 스스로 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연내 제정은 더 가까워진다. 타협없는 인권을 위해 우리의 더 큰 힘을 모아내자. 지금 국회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가져오기 위해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행동하자. 그리고 마침내 차별금지/평등법을 길잡이 삼아 우리의 일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며 더 신나게 평등을 향해하자.